#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59 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 박덕흠 · 성일종 · 안철수

서천호 · 김성원 · 김소희

장동혁 • 윤영석 • 김민전

박정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356호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은 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. 한편, 현 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·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 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, 10년 이상 복무 후 사망한 군인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경찰·소방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, 장기복무군인의 경우와 같 이 장기복무한 경찰·소방공무원을 근무기간 및 공헌 정도에 비례하 여 안장하는 국립묘지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,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

장대상자로 정하여 퇴직한 경찰·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##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.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를 준용한다.

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전단 중 "30년"을 "25년"으로, "사람(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)"을 "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4호의2 중 "제1항제4호라목"을 "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제4호라목"으로 한다.

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중 "타목 및 파목"을 "타목, 파목 및 거목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찰·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 제1호거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|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 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. 다만,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국립서울현충원, 국립대전현 1. ------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. ~ 하. (생 략) 가. ~ 하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거. 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30 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으로서 사망한 사람.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 를 준용한다. 2. · 3 . (생략) 2. • 3. (현행과 같음) 4. 국립호국원 4. -----가. ~ 다. (생 략)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경찰·소방공무원으로 30 <u>년</u>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

으로서 사망한 <u>사람(경찰</u>
·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
<u>직한 사람에 한정한다).</u>
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
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
조를 준용한다.

- 5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.
- 1. ~ 4. (생략)
- 4의2. <u>제1항제4호라목</u>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 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(榮譽性)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
- 5. (생략)
- ⑥·⑦ (생 략)

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외부개정법률 제10조(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제10조(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

<u>사람</u>
<u>.</u>
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5
1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
항 제4호라목
5. (현행과 같음)
⑥·⑦ (현행과 같음)
⑥·⑦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
⑥·⑦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⑥·⑦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

치 등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(이하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제5조제1항제1호차목, <u>타목</u>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 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 부
- 2. ~ 6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
치 등) ①
<b>-</b> .
1 <u>타목,</u>
<u>파목 및 거목</u>
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